

이 사 회 규 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유한화학(이하 "회사"라 한다) 이사회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제 4 조 (책임)

-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해당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이사회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.
-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5 조 (구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6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직위 순 및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 (감사의 출석등)

-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8 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9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②항에 정한 순으로 그

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일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의결방법)

- ① 이사회를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를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2 조 (부의사항)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3) 재무제표의 승인
 - (4)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2. 이사의 업무분장 및 보직 등에 관한 사항
 - (1) 대표이사의 선임

- (2) 임원의 업무분장
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(투자사 임원겸임 예외)
- 3. 재무에 관한 사항
 - (1) 자본금 100 분의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처분
 - (2)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자산의 취득 및 처분
 - (3) 자본금 100 분의 10 이상의 설비투자
 - (4) 신주의 발행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
 - (5) 사채의 발행
 - (6)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행위의 한도설정
- 4. 경영에 관한 사항
 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 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(특허권의 양수, 양도 등)
 - (3) 연간 사업계획의 확정
 - (4) 제반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
 - (5)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- (6)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
 - (7)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3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①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

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- ③ 의사록은 본점에 보관한다.
- ④ 의사록의 사본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1980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
(개정) 본 규정은 2004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